

법원공보

2024. 12. 15

제1702호



법원행정처

목차

contents

규칙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846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848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850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855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899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1950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1955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959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965
입목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97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개정규칙	1978
선박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982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984

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 1986

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 — 1988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1992

신법령 목록

_____ 1994

인사

_____ 1998

규칙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66호 2024. 11. 29. 공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41인”을 “38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u>41인</u> , 검사는 9인으로 한다.	제17조(교수의 구성) ----- -----, -- ----- <u>38인</u> , -----.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67호 2024. 11. 29.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별도의 대법원규칙”을 “「전문심리위원규칙」”으로 한다.

제3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u>별도의 대법원규칙</u> 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 「전문심리위원규칙」----- ----- ---
〈신 설〉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4. 11. 29. 공포)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③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5부터 제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과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
2. 변호사 2명
3. 대학교수 1명

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6(업무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7(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전문심리위원이”를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로, “상임전문심리위원에서”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전문심리위원이”를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을”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u>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u>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 ----- <u>「민사소송법」</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u>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u> ③ <u>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신설〉	제2조의5(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u>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과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u>

현행	개정안
	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 2. 변호사 2명 3. 대학교수 1명 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6(업무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7(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u>상임전문심리위원</u>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 8. (생략)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u>상임전문심리위원</u>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u>상임전문심리위원에서</u> 해촉한다.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u>상임전문심리위원</u>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u>상임전문심리위원을</u>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4조(수당 등) ① (생략) ② <u>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u>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3조(결격사유) ① ----- ----- <u>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u>-----. 1. ~ 8. (현행과 같음) ② ----- <u>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u>----- ----- <u>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서</u>---. ③ ----- <u>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u>----- ----- <u>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u>----.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u>----- ----- 다만, <u>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u> 겸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공포)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방법 및 제3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

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문서(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을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보존하여야 한다”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그 이미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를 “보존한다”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삭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제22조제2항 중 “1년마다”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

하여 부여하되, 매년”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2. 제1호의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등기기록을”을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인터넷에 의한 열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6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를 “자격자대리인이”로, “자필서명한 정보”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제6항 본문 중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호나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잘못 기록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제6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첨부정보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2.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 다만, 행정기관의 적법한 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등기유형과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변환의 구체적인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 ③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 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 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건의 등기신청정보가 송신된 경우 각 등기신청에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연속하여 생성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의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4조제4항 및 제5항, 제89조제2항 및 제3항, 제9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34조의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분필, 합필등기를 마치거나 그 등기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경정하기 위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

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관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관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를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첨부서면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정보를”을 “확인서면을”로 한다.

제1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제2항 후단 중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①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139조의4에 따라 마쳐진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1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제159조제2항 중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의신청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이의신청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로 하고, 제163조부터 제163조의6까지, 제164조부터 제164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으로 한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이하 “공동저당”이라 한다)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변경·말소등기의 신청
4.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말한다.

1.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기의 신청
2. 제1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변경·말소등기의 신청
3.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③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역지에 대한 등기
2. 법 제78조제4항(법 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멸실한 토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로서 제8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기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등기
5.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제136조제1항에 따른 등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하여야 하는 등기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164조(상속·유증 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는 경우
 -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 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다.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② 관공서가 법 제96조 및 제99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의2(상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165조와 제166조를 각각 제166조와 제167조로 하고,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에 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양식부터 별지 제3호 양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9조의4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21일
2. 제67조제4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3.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

제2조(중전의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의 등기기간) 법률 제2043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중전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등기전자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접수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기완료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5호와 제10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담보 등기기록 등의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중전의 법(개정부동산등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각 관할 등기소별로 공동담보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법 제78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136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먼저 중전 공동담보의 내역이나 공동담보목록을 말소하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이나 목록을 새로이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중전 공동담보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관할 등기소가 동일한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새로 추가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시범사업의 특례) 개정부동산등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 제23조,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4항제2호,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2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시범사업 등기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토지등기기록

[토지] 0000시 00구 00동 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을 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양식] 건물등기기록

[건물] 0000시 00구 00동 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0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을 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양식] 구분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 0000시 00구 00동 00 제0동 제0층 제0호 고유번호 0000-0000-000000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을 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현행	개정안
〈신설〉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

현행	개정안
제7조(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법 제11조 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	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방법 및 제3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

현행	개정안
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 ③
①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② (생략)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호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호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 ----- ----- ----- --, 소재지번호·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

현행	개정안
둔다. ② · ③ (생략)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u>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u>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 ----- ----- -----<u>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u> ----- ----- -----<u>보존한다.</u>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삭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에 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년 ② 제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22조(접수장)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

개정안
〈삭제〉 제22조(접수장)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여부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 -----

현행	개정안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2. 제1호의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생략)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① ----- -----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

현행	개정안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 ----- --.
제46조(첨부정보) ① (생략)	제46조(첨부정보)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6. 등기관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u>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u> 7. (생략) 8. <u>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u>]가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② ----- ----- ----- -----, <u>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인터넷에 의한 열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 5. (현행과 같음) 6. ----- ----- ----- -----, <u>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u> -----. 7. (현행과 같음) 8. <u>자격자대리인이</u> ----- ----- ----- ----- ----- ----- -----

현행	개정안
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u>자필서명한 정보</u>	----- ----- -----<u>대법원예규로 정하는</u> <u>방법에 따라 자필서명한 정보</u>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u>	⑤ <u>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u>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u>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u>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u>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u>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

현행	개정안
⑧·⑨ (생략)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생략)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신설〉	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⑨ (현행과 같음)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호나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

현행	개정안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생략)	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잘못 기록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현행과 같음)
5.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신설〉	6. (현행 제5호와 같음)
5.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

현행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생략)

⑤ (생략)

〈신설〉

개정안

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제43조제1항 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첨부정보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

현행	개정안
〈신 설〉	는 경우로 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2.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 다만, 행정기관의 적법한 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등기유형과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변환의 구체적인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7조의4(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건의 등기신청정보가 송신된 경우 각 등기신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연속하여 생성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유형의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 ----- .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 ----- -----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토지멸실등기) ① ~ ③ (생략)	제84조(토지멸실등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경우에 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	〈삭제〉

현행	개정안
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부동산 및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와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① (생략)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 ④ (생략) ⑤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록하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생략)	〈삭제〉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② ----- 제4항 -----.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34조의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분필, 합필등기를 마치거나 그 등기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경정하기 위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가 되

현행	개정안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 <u>신설</u> 〉	<u>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의 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u>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관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관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u>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생략)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u>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u>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u>확인정보</u> 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첨부서면으로서</u>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 <u>확인서면을</u> -----.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 ----- ----- -----

현행	개정안
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다만,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① (생략)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u>	② ----- ----- ----- ----- -----, ----- <u>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u> ----- ----- ----- -----.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생략)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경우 다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u>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①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①·② (생략)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신탁등기의 말소 등기를 할 때에는 제139조의4에 따라 마쳐진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① ----- ----- ----- ----- ----- -----.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u>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u>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u>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u> 〈신설〉 제6장 보칙 〈신설〉	② 법 제101조에 따라 <u>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u>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u> ③ ----- ----- <u>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u>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u>이의신청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u>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u>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u>”은 다음 각 호의 신청으로 한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개의 부동산에

현행	개정안
	<u>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이하 “공동저당”이라 한다)등기의 신청</u> 2. <u>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u> 3. <u>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변경·말소등기의 신청</u> 4. <u>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u> ② <u>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말한다.</u> 1. <u>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기의 신청</u> 2. <u>제1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변경·말소등기의 신청</u> 3. <u>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u> ③ <u>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처리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역지에 대한 등기 2. 법 제78조제4항(법 제7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멸실한 토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현행	개정안
	목적인 경우로서 제8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기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등기 5.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제136조제1항에 따른 등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하여야 하는 등기
〈신설〉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 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이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신설〉	제164조(상속·유증 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는 경우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현행	개정안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 다)한 경우 다.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② 관공서가 법 제96조 및 제99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64조의2(상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장 보칙
〈신 설〉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에 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제165조 (생 략)	제166조 (현행 제165조와 같음)
제167조 (생 략)	제167조 (현행 제166조와 같음)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공포)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

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리”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 전자서명을 하여 미리”로 한다.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제5조의 제목 “(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를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로, “본점등기기록”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외국회사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

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

2. 제1호 외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방법 및 제4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9호까지 양식”을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이의신청서류”를 “이의신청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를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제23조제2항 중 “매년”을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으로 한다.

제24조 중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를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

청서 기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이의신청서류”를 “이의신청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를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제26조제1항 중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

1.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등기기록”을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제33조제1항 중 “열람”을 “등기기록의 열람”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등기사항의 공시제한”)을 “(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열람”을 “등기기록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각각 “인감카드”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를 “자격자대리인이”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법원예규”를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휴대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으로, “발급한다”를 “발급받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생년월일을 기록한다”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전자신청 또는”을 “전자신청,”으로, “발급신청”을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제50조제2호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을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 및 제614조의2”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또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을 “방문신청”으로, “등기소”를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을 “전자신청”으로, “등기소”를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관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제67조제4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

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중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이 있었음을 증명”을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8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제89조제6호 및 제7호 중 “구 소재지에서 하는”을 각각 “종전 소재지에 관한”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그”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99조제1항”을 “제99조”로, “제1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을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① 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를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로,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를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로,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종전 소

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54조와 제57조 및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18조 중 “제113조까지, 제115조”를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로 한다.

제127조제1항 전단 중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를 “제99조, 제100조, 제102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를 “제99조, 제100조, 제10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6조제1항을”을 “제116조를”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를 “제99조, 제100조, 제102조”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74조”를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65조제1호 중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을 “종전 소재지에 관한”으로, “구소재지”를 “종전 소재지”로 한다.

제1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 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점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점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6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본점의 등기기록에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7조(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본점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본점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를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 제101조”를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을 “제154조제4항·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8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로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별지 제9호의2] (외국 합명회사 또는 외국 합자회사)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	.
	.	.
본 점	.	.
	.	.
	.	.
	.	.

목 적

사원 · 청산인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영업소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회사성립연월일****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9호의3] (외국 유한책임회사)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	.
	.	.
본 점	.	.
	.	.
	.	.
	.	.

공고방법	.	.
	.	.
	.	.
	.	.

목 적

업무집행자·청산인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지점에 관한 사항**지배인에 관한 사항****회사성립연월일****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9호의4] (외국 주식회사)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	.
	.	.
본 점	.	.
	.	.
	.	.
	.	.

공고방법	.	.
	.	.
	.	.
	.	.

목 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영업소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회사성립연월일****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9호의5] (외국 유한회사)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	.
	.	.
본 점	.	.
	.	.
	.	.
	.	.

공고방법	.	.
	.	.
	.	.
	.	.

목 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영업소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현행	개정안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② (생략)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1. ~ 3. (생략)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 -----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현행	개정안
4.·5. (생략) 제5조(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생략) ④ 다른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4.·5. (현행과 같음)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지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 합자조합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

현행	개정안
〈신 설〉	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외국회사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 2. 제1호 외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신 설〉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현행	개정안
〈신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현행	개정안
제10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 ③ (생략)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방법 및 제4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생략)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 3. (생략) 4. <u>이의신청서류</u> 편철장 5. <u>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u> 등 편철장 6. ~ 9. (생략) 〈신설〉 10. ~ 13. (생략) ②·③ (생략)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 -----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u>이의신청서류</u> 등 -- 5. <u>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u> ---- 6.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법원예규에서

현행	개정안
여하여야 한다.	<u>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u>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항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이의신청서류 편철장</u> : 10년	4. <u>이의신청서류 등</u> -----
5. <u>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u> : 10년	5. <u>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u>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u> : 5년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 ----- ----- ----- <u>인감증명서</u> ----- ----- ----- -----.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 1.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열람의 방법)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제29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 -----

현행	개정안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신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u>인감카드</u> 또는 <u>전자증명서</u>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	----- ----- ----- ----- -----.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 ----- ----- -----.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 ----- <u>인감카드</u>----- ----- ----- ----- ----- ----- -----

현행	개정안
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u>	③ <u>인감카드</u>----- ----- ----- -----.
〈<u>신설</u>〉	<u>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u> <u>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u> <u>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u>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	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 ----- ----- 자격자대리인이 -----

현행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 자대리인”이라 한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 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신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 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2. ~ 5. (생략)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 신 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 -----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 용 --- 발급받는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 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 할 수 있다.
③ ----- -----.
1. -----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3호-----.
⑤ ----- 전자신청, -----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 ----- -----.
⑥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2. 제46조제4항-----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51조(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 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신청정보) ①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지점의 표시	〈삭제〉
8. ~ 11.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해당 등기기록에 따 라 조합원의 가입연월일, 사원의 입사연월 일, 업무집행자·임원·청산인의 취임연월일 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	〈삭제〉
③ 「상법」 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 8제2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③ ----- -----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 및 제614조의 2 -----

현행	개정안
는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생략) ② (생략) ③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u>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u> ④·⑤ (생략) 〈<u>신설</u>〉	----- -----. 제52조(첨부정보)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u>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직접 확인</u> <u>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u> ----- ----- <u>제공하여</u> <u>야 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u>

현행

제55조(등기의 방법) ① ~ ③ (생략)

〈신설〉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생략)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 (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 (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기록을 부활하거나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기록을 폐쇄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

개정안

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등기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방문신청 -----

-----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

2. 전자신청 -----

---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지점 등기기록을 부활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u>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u>1.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u> 2.·3.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 ----- ----- -----. <u>〈삭제〉</u>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u> <u>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u> <u>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u>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현행	개정안
1.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u>〈후단 신설〉</u> 2.·3. (생략) ⑤ (생략) <u>〈신설〉</u>	1. -----. 이 경우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2.·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격자 대리인은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 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3호의 정

현행	개정안
	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 ----- ----- 제1항에 따른 기간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상호의 가등기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의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 -----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 ----- ----- 서면(이하 “공탁 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 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이 경우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

현행	개정안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 ----- ----- 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u>구 소재지에서 하는</u>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 ----- <u>종전 소재지에 관한</u> ----- ----- -----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u>구 소재지에서 하는</u>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 ----- <u>종전 소재지에 관한</u> ----- ----- -----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①·② (생략)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원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 그 조합원 또는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u>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그 생년월일을</u> 등기하여야 한다.	③ ----- ----- ----- <u>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u> ----- -----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 ----- <u>제99조</u> ----- -----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 ----.

현행

②·③ (생략)

④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지점등기기록 등의 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의 본점이전 등기신청은 주소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주소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소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법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쇄하는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③ 주소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116조제1항제1호의 등기를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주소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주소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

개정안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① 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① --
-----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

현행	개정안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u>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할 수 있다.</u> ② <u>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법 제56조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u> ③ 법 제55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u>구소재지 관할 등기소</u>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101조(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58조는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지점에 관한 등기</u> <u>2.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u> <u>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u>	----- ----- ----- <u>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u> -----.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u>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u>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③ ----- ----- -- <u>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u> ----- -----. 〈삭 제〉

현행

관할하는 등기소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합병등기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법 제58조의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는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2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덧붙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도 기록한다.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54조와 제57조 및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개정안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65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

현행	개정안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점폐지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산종결의 등기 5.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관은 그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현행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 집행자”로 본다.
②·③ (생략)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③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⑤ (생략)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제116조를 ----- -----.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 ----- ----- -----.

현행

② (생략)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생략)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3. (생략)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생략)

〈신설〉

개정안

② (현행과 같음)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
----- 중전 소재지에 관한
-----중전 소재지

2.·3. (현행과 같음)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현행	개정안
〈신 설〉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1호 2024. 11. 29. 공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2호 중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를 “주된”으로,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를 “본점이전등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신청하는”을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를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8, 제5조의9, 제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칙 제2조에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인감증명서) ①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1. (생략)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u>신소재지</u> 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주된 ----- ----- -- 본점이전등기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u>새 소재지</u> 에
〈신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수수료납부) ① ----- ----- ----- ----- ----- ----- -----

현행	개정안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 ----- ----- -----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 ----- -----.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2호 2024. 11. 29. 공포)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사무소·본점 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주사무소(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분사무

소(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분사무소의 대리인, 지배인 등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4조(폐쇄된 분사무소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분사무소 등기기록의 대리인,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주사무소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u>」(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u>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u>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법 제3조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u> 2. <u>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u> 3. <u>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u> 4. <u>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u> 5. <u>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u>	<u>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u> 제1조(목적) ----- 「<u>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 ----- ----- ----- <u>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u> -----.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 종결에 관한 등기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삭 제〉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3호 2024. 11. 29. 공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4자리수”를 “4자리 수”로,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를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로,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를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을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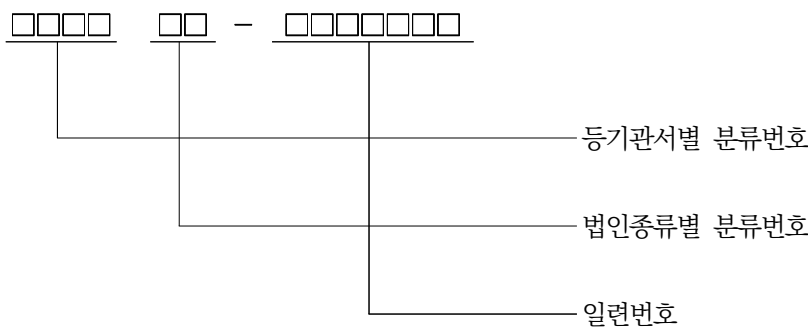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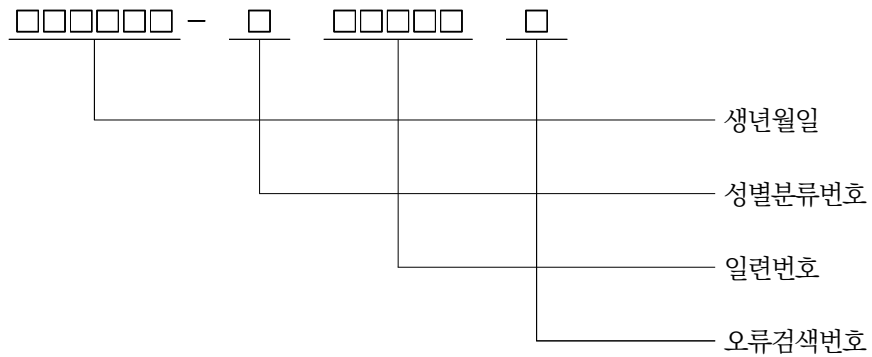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별표 4]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별표 5]

오류검색번호 산출방식

1. 생년월일, 성별분류번호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연결한 12자리의 숫자를 만든다.

(예시)

1	1	0	1	1	1	-	3	0	6	2	4	3

생년월일
성별분류번호
일련번호

2. 각 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한다.

(예시)

1	1	0	1	1	1	-	3	0	6	2	4	3	
×	1	2	1	2	1	2	-	1	2	1	2	1	2
1	2	0	2	1	2		3	0	6	4	4	6	
1+2+2+1+2+3+6+4+4+6=31													

3. 합을 10으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예시) $31 \div 10 = 3$ 나머지 1

4.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다만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예시) $10 - 1 = 9$ — 오류검색번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 -- 4자리 수-----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 -----.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삭제〉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 ----- -----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 ----- 별표 4-----.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③----- -----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 ----- -----.

현행	개정안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생략) ② 삭제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u>등기관</u>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③ ----- ----- ----- <u>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u> -----. ④ ~ ⑥ (현행과 같음)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4호 2024. 11. 29. 공포)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등기관의 식별부호 기록)”을 “(등기전자서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미리”를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로 한다.

-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등기사항의 일부 공시제한)”을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등기기록을”을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를 “담보권설정자”로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

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3의2호”를 “제3호의2”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을 “자격자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확인서면 등”이라 한다)를”을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로, “제출 또는 송신”을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서면등”을 “확인서면”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를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로,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확인서면등”을 “확인서면 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수단에 의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제4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2.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

제2조(등기전자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등기관의 식별부호 기록) <신 설>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 --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 ④ (생략)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에 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등기사항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에규로 정한다.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 -----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 담보권설정자 ----- ----- ----- -----.

현행	개정안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제33조(등기의 방법)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의2호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등기의 방법) ①----- ----- ----- ----- ----- ----- ----- ----- ----- ----- 제3호의2 ----- --.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u>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u>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확인서면등”이라 한다)를 등기소에 제출 또는 송신</u>하여야 한다. ④ <u>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인서면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u>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 ----- ----- ----- -----, ----- <u>자격자대리인</u>-----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u>----- ----- <u>제출</u>-----. ④ ----- <u>확인서면</u>-----.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 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 ----- ----- ----- ----- ----- ----- -----
1. 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제3항의 <u>확인서면</u>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1. ----- <u>확인서면</u> 등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생략) <u>〈신설〉</u>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에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 때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수단에 의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3. (생략) ④ (생략)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 ----- . 다만, 자격자대 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1항에 따른 기간-- -----. ④ (현행과 같음)

● 입목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5호 2024. 11. 29. 공포)

입목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접수장) ①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입목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9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은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입목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입목의 등기 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입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63조부터 제164조의2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조(접수장) ①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입목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 (생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 (생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 (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9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은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

현행	개정안
<u>제8조 (생략)</u> <u>제9조</u>(「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입목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u>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u>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입목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입목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입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u>제10조</u> (현행 제8조와 같음) <u>제11조</u>(「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 ----- ----- <u>제27조부터 제28조의 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63조부터 제164조의 2까지</u>-----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6호 2024. 11. 29. 공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접수장) ① 공장재단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장재단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장재단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27조부터 제28조의 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접수장) ① 공장재단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장재단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장재단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①·② (생략)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 제4항-----.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 ----- ----- 제27조부터 제

현행	개정안
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

● 선박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7호 2024. 11. 29. 공포)

선박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은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선박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선박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준용규정) ----- ----- -----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 -----.
〈신설〉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은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선박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선박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78호 2024. 11. 29. 공포)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접수장) ①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5.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접수장) ①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5.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 (생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 (생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 (생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 -----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 -----.

내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73호 2024. 12. 4.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예규

◎ 등기정보시스템운영·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11호 2024. 12. 3. 결재)

등기정보시스템운영·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사용] ① 등기소 공무원은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등기사무 처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하여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을 적용한다.

제3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역관리소 발급용 카드, 등기관카드 및 전산실 출입용 카드”를 “지역관리소 발급용 카드 및 전산실 출입용 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카드와 지역관리소 전산실 출입용 카드”를 “지역관리소 전산실 출입용 카드”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존 등기관의 등기관카드를 회수하고 등기관카드에 해당하는 식별부호”를 “기존 등기관의 식별부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기관카드, 사용자 식별부호”를 “사용자 식별부호”로, “등기관카드에 해당하는 식별부호”를 “식별부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칙 제6조,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기소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2일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3조의2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사용] ① 등기소 공무원은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 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등기사무 처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하여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을 적용한다.
제35조 [카드 발급자] ① ~ ③ (생략) ④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등기소장 또는 확정일자 업무의 주무과장으로부터 “ 별지 6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발급 신청 서”를 받아 등기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카드 발급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6조 [발급용 카드] ① 중앙관리소 발급용 카드는 지역관리소 발급용 카드, 등기관카 드 및 전산실 출입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 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② 지역관리소 발급용 카드는 관할 등기소 의 등기관카드와 지역관리소 전산실 출입 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제36조 [발급용 카드] ① ----- -----지역관리소 발급용 카드 및 전산실 출입용 카드----- -----. ② ----- 지역관리소 전산실 출입용 카드----- ----- --.
제37조 [등기관카드] ① 등기관카드라 함은 변조된 전산등기부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 여 등기관이 전산등기부에 전자서명을 부여	〈삭 제〉

현행	개정안
하는 카드를 말한다. ② 등기관카드는 등기사무 업무별로 발급되며 등기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확정일자 담당공무원용 등기관카드는 확정일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등기소장 또는 확정일자 업무의 주무과장은 등기관카드를 신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6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7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에게 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사이동 및 퇴직할 경우의 조치] ① (생략) ② 등기소장은 인사이동 및 업무변동된 기존 등기관의 등기관카드를 회수하고 등기관카드에 해당하는 식별부호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장은 인사이동 및 업무변동된 신규 등기관에게 등기관카드, 사용자 식별부호 및 초기비밀번호를 전달하여야 하며, 등기관카드에 해당하는 식별부호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9조 [인사이동 및 퇴직할 경우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존 등기관의 식별부호----- ----- -----. ③ ----- 사용자 식별부호 ----- 식별부호----- -----. ④ (현행과 같음)

●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12호 2024. 12. 5. 결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 가정·회생법원장 외 가정·회생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및 윤리 감사관에 해당하는 직책에 보임한 기간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지급제외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지급제외자) ① ----- ----- -----, 다만,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의 전용차량 배정 법관인 경우 전용차량 이용기간	2.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가정·회생법원장 외 가정·회생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및 윤리감사관에 해당하는 직책에 보임한 기간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법령 목록

(2024. 11. 16.~2024. 11. 30.)

조약

조약제2586호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 간의 협정	20879	2024. 11. 22	4
조약제25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0884	2024. 11. 29	6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004호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76	2024. 11. 19	3
대통령령제35005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500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500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500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881	2024. 11. 26	4
대통령령제35009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5010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501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501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5013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12
대통령령제35014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5015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5016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5017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50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35019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24

총리령

총리령제199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1	2024. 11. 26	27
-----------	-------------------------------	-------	--------------	----

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875	2024. 11. 18	4
교육부령제34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76	2024. 11. 19	14
여성가족부령제2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78	2024. 11. 21	4
국토교통부령제1407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79	2024. 11. 22	22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3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국토교통부령제140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0	2024. 11. 25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교육부령2024-346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881	2024. 11. 26	28
국방부령제116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3
국토교통부령제140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국토교통부령제1409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2
기획재정부령제10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4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6
농림축산식품부령제6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7
보건복지부령제1071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5
여성가족부령제2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6
외교부령제14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7
해양수산부령제705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9
환경부령제1132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1
국토교통부령제1410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2	2024. 11. 27	4
보건복지부령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3	2024. 11. 28	4
국토교통부령제1411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884	2024. 11. 29	13
국토교통부령제141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7

기획재정부령제1090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27
산업통상자원부령제585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중소벤처기업부령제9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행정안전부령제52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6
행정안전부령제525호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5

인사

인사발령 법 제177호 2024. 11. 1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변성환	2024. 11. 25.부터 2024. 12. 2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78호 2024. 11. 1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정	2024. 11. 14.부터 2024. 11.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자연 속에서의 쉼과 여유) 피교육을 명함	
”	박정길	”	
”	한숙희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순교	2024. 11. 14.부터 2024. 11.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자연 속에서의 쉽과 여유) 피교육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석근	"
	"	이창열 (李昌烈, 691219)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
	"	김현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만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나우상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박헌행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윤정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2024. 11. 14.부터 2024. 11.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자연 속에서의 쉽과 여유) 피교육을 명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소현	2024. 11. 14.부터 2024. 11.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자연 속에서의 쉽과 여유) 피교육을 명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2024. 11. 14.부터 2024. 11.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자연 속에서의 쉽과 여유) 피교육을 명함
	"	김지영(金志煥)	"
	"	김현주(金賢周)	"
	"	장원정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소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서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수진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김도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리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채은	"
			끝.

인사발령 법 제179호

2024. 11.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철	2024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Ⅲ (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4. 11. 19.) 피교육을 명함
	"	정인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정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권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상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빈태욱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	2024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Ⅲ (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4. 11. 19.)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지용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준승	2024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Ⅲ (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4. 11. 19.) 피교육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혜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현기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원운재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은경	" 끝.

인사발령 법 제180호

2024. 11. 1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미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	박사랑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지원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	성지호	"
	"	송영환	"
	"	이내주	"
	"	이상아	"
	"	임범석	"
	"	정인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권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우찬	"
	"	김형석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래아	"
	"	최서은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도요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	박근정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향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영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상제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부동식	"
	"	이영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창석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권상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현석	"
	"	이성호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이경희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빈태욱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용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	이효두	"
	"	정우혁	"
	"	조현선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윤경	"
	"	조장현	"
	"	채성호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연수	"
	"	장미옥	"
	"	표현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권 희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송병훈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진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영하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석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선옥	"
	"	배구민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	"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욱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
	"	장지용	"
라.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남해인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산아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나나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	김미진	"
	"	김택형	"
	"	신정민(申貞旻)	"
	"	오형석	"
	"	이준승	"
	"	정윤주	"
	"	최파라	"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미영	"
	"	박혜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혁재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의담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호승	"
	"	한진희	"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희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호선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신예슬	2024. 11. 21.부터 2024. 11.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미술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 피교육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장혜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신재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황용남	"
	창원지방법원 판사	홍승모	"

끝.

인사발령 법 제181호

2024. 11.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회근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영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	류연중	"
	"	박지원	"
	"	최해일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원정숙	"
	"	이규훈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양상윤	"
	"	이용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
	"	박석근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민성	"
	"	최은주	"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기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서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대규	"
	"	서범준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보기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유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곽형섭	"
	"	김태환	"
	"	홍득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태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동원	"
	"	염원섭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최석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안종화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
	"	신교식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류봉근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연경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차경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성수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여경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	박현경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성욱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석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병규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위수현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구민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	김대현	"
	"	김슬기	"
	"	백승엽	"
	"	최현종	"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창훈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종환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마.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경모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창용	"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지은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	손광진	"
	"	오형석	"
	"	이백규	"
	"	이인화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민희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	정재우	"
	"	최파라	"
	서울가정법원 판사	임세준	"
	서울행정법원 판사	곽동준	"
	"	정한영	"
	"	허준기	"
	서울회생법원 판사	황성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관중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이지은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곽동우	"
	"	김달하	"
	"	박나라	"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
	수원회생법원 판사	최해진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채은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혜진	"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 겹	"
	"	심현우	"
	"	이호영	"
	"	허인성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이인걸	"
	"	장지웅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창현	"
	"	조진용	"
	대구지방법원 판사	권재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은경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윤규	"
	"	정성희	"
	"	최리니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울산지방법원 판사	하대경	2024. 11. 25.부터 2024. 11. 26.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연구(편람연계)) 피교육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곽리찬	"
	"	김수현	"
	"	최태진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성인	"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황선	"
	"	황방모	" 끝.

인사발령 법 제182호

2024. 11. 2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보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1. 17.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건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덕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8. 29.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성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2. 14.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7. 3.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심홍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2.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	2024. 12. 20.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문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옥제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2.부터 2025. 8. 8.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은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19.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유진홍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26.부터 2025. 12. 24.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사해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2.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4. 12. 4. 자)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훈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12. 23.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2. 23.부터 2025. 8. 8.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조수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12. 11. 자)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12. 1. 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강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4. 12. 25.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83호

2024. 11. 2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2024. 11. 28.부터 2024. 11.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본법률총서 연계) 피교육을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영환	2024. 11. 28.부터 2024. 11.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본법률총서 연계) 피교육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우	"
	"	원정숙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은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염원섭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원지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연경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류준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신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석	2024. 11. 28.부터 2024. 11.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본법률총서 연계) 피교육을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병규	"
	"	유철희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구민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승엽	2024. 11. 28.부터 2024. 11.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본법률총서 연계) 피교육을 명함
	"	유동균	"
	"	이은혜	"
	"	이준영	"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건우	"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우	2024. 11. 28.부터 2024. 11.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본법률총서 연계) 피교육을 명함
	"	강경미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대현	2024. 11. 28.부터 2024. 11.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본법률총서 연계) 피교육을 명함
	"	박승균	"
	"	정윤주	"
	"	최파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임한아	"
	수원지방법원 판사	곽동우	"

인사발령 법 제184호

2024. 11.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2024. 12. 23.부터 2025. 1.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우관제	2024. 12. 2.부터 2024. 12.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원정숙	2024. 12. 30.부터 2025. 1.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종엽	2024. 12. 16.부터 2025. 1.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2024. 12. 25.부터 2025. 1.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곤	2024. 12. 30.부터 2025. 1.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유형	2024. 12. 30.부터 2025. 1.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기만	2024. 12. 23.부터 2025. 1. 1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당우증	2024. 12. 8.부터 2025. 1. 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유환우	2024. 12. 16.부터 2025. 1.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민수	2024. 12. 4.부터 2024. 12. 3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식	2024. 12. 13.부터 2025. 1. 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열 (李昌烈, 731217)	2024. 12. 4.부터 2024. 12. 3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정	2024. 12. 16.부터 2025. 1.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정상규	2024. 12. 23.부터 2025. 1.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정철민	2024. 12. 19.부터 2025. 1. 1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2024. 12. 4.부터 2025. 1. 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2024. 12. 23.부터 2025. 1. 1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오	2024. 12. 11.부터 2025. 1. 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	2024. 12. 9.부터 2025. 1. 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신용호	2024. 12. 14.부터 2025. 1.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정경근	2024. 12. 30.부터 2025. 1. 2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운삼	2024. 12. 11.부터 2025. 1. 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85호

2024. 11.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승범	판사에 연임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백대현	판사에 연임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박현진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학식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수홍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공민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환	"
	"	김세욱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연	"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진화	판사에 연임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소정	판사에 연임함
	"	안희경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수진	판사에 연임함
	"	최민혜	"
	"	함현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지충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오선아	"
	"	이민영	"
	인천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
	수원회생법원 판사	남관모	"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은희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구천수	"
	청주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규석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

(2024. 12. 1. 자) 끝.

사발령 법 제186호

2024. 11. 2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승일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	김상우	"
	"	김소영	"
	"	김지혜	"
	"	박정길	"
	"	소병진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우	"
	"	이규훈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숙	"
	"	홍진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석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민성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은주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기현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보기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창성	"
	"	진현섭	"
	"	허정룡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부동식	"
	"	이영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염원섭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강애란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우근	"
	"	장민경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효두	"
	"	정우혁	"
	"	조현선	"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우인선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	이상률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진	"
	"	김태균	"
	"	김희동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소민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신동현	"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운성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류준구	"
	"	박병민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김희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호석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병규	"
	"	서정희	"
	"	유철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천무환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구민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	김슬기	"
	"	남양우	"
	"	박정제	"
	"	송미경	"
	"	이은혜	"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우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	현의선	"
라.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경모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창용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가희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	김은영	"
	"	신정민(申貞旻)	"
	"	오하나	"
	"	이준승	"
	"	전경민	"
	"	전준영	"
	"	채지웅	"
	"	최파라	"
	서울가정법원 판사	임세준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민아	"
	"	김주완	"
	"	김형준	"
	"	심용아	"
	"	허준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종완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	윤석범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관중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섭	"
	"	임현수	"
	"	정희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이지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형돈	"
	"	여한울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달하	"
	"	박나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지인	"
	"	이필복	"
	"	이형철	"
	"	이호선	"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정준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이은상	2024. 12. 2.부터 2024. 12.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4년도 기업분야소송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명수	"
	"	김하림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현우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이인걸	"
	청주지방법원 판사	전보람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조진용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아영	"
	"	선승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신재호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은경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윤규	"
	"	이호태	"
	창원지방법원 판사	곽리찬	"
	"	김수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경민	"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현	"

끝.

인사발령 법 제187호

2024. 11. 2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문세	16호봉을 급함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양민호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15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현범	13호봉을 급함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현오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김현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률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승원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현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식	"
	"	진재경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진희	12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래	11호봉을 급함
	"	정종건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은진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박세영	11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현	"
	"	송현직	"
	"	장민경	"
	"	장원지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미립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민정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병휘	"
	"	류봉근	"
	"	박혜림	"
	"	정종륜	"
	"	현선혜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건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김애정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장판사	김동원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종완	"
	"	김미경	"
	"	김태환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명선	11호봉을 급함
	"	허정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남효정	"
	"	정승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손영언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오상혁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희	"
	"	김현희	"
	"	오세영	"
	"	이경린	"
	"	이미경	"
	"	이보람	"
	"	이소민	"
	"	이소연	"
	"	인진섭	"
	"	조서영	"
	"	하성우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지현	"
	"	조현욱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재찬	11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화송	"
	"	장성욱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진	"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미연	"
	"	윤 민	"
	"	이재원	"
	"	이주연	"
	"	전범식	"
	"	정현희	"
	"	탁상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강미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욱	"
	"	연선주	"
	"	이상훈	"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익	"
	"	양소은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용규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손성희	11호봉을 급함
	"	장두영	"
	"	정희영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	전경태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세황	"
	"	안좌진	"
	"	정세진	"
	"	천무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위수현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태	"
	"	전용수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희	10호봉을 급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17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16호봉을 급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14호봉을 급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11호봉을 급함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덕교	11호봉을 급함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재	11호봉을 급함
	"	장인혜	"
	"	추진석	"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종환	13호봉을 급함
	"	기진석	11호봉을 급함
	"	김기춘	"
	"	김대원	"
	"	나원식	"
	"	박동규	"
	"	박설아	"
	"	손주희	"
	"	오대석	"
	"	이길범	"
	"	이새롬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李承勳, 840229)	11호봉을 급함
	"	이재환	"
	"	이혜린	"
	"	이혜민	"
	"	임 솔	"
	"	장윤식	"
	"	최수영	"
	"	하정훈	"
	"	한동석	"
	"	황성욱	"
마.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성욱	11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주일	9호봉을 급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지혜	"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11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경록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택형	11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승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
	서울행정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근철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희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이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상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옥희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
	"	윤명화	"
	전주지방법원 판사	허윤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정화	10호봉을 급함
	"	정혜원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9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해마루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혜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지인	"
	"	정연주	"
	인천지방법원 판사	진희원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안혜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엄현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광식	7호봉을 급함
	"	한광수	"
	인천지방법원 판사	함덕훈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박지은	"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유리	"
	"	차은주	"
	"	홍연경	"
	춘천지방법원 판사	허경은	"
	청주지방법원 판사	서보람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창현	7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소영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은경	"
	부산지방법원 판사	신승아	"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창건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대욱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규완	"
	"	남덕희	"
	"	신나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자경	6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 웅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예솔	5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박한나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
	"	이은비	"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강현명	"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윤집	5호봉을 급함
	"	문창남	"
	"	박정현	"
	"	김시정	4호봉을 급함
	"	민지홍	"
	"	송서운	"
	"	이보경	"
	"	하정민	"

(2024. 12. 1.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88호

2024. 11. 2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24. 12. 5. 자) 끝.



법원행정처

SUPREME COURT OF KOREA

2024. 12. 15. VOL. 1702



ISSN 2951-2255